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가경정 제2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92,594,949	80,777,848
일반회계			2,125,307,026	63,759,211
특별회계			567,287,923	17,018,638
	공기업특별회계		242,414,098	7,272,423
		상수도사업	76,826,720	2,304,802
		하수도사업	165,587,378	4,967,621
	기타특별회계		324,873,825	9,746,215
		공유재산관리	96,319,854	2,889,596
		의료급여기금	9,713,177	291,39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715,856	21,476
		교통사업	86,399,867	2,591,996
		철도건설사업	43,898,260	1,316,948
		폐기물처리시설	6,474,845	194,245
		도시재정비촉진	1,326,834	39,805
		도시개발	32,550,449	976,513
		공공시설등 설치	3,696,069	110,882
		문화시설건립	31,181,806	935,454
		도시재생	12,446,808	373,404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150,000	4,500

제 2 조 세입 ㆍ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ㆍ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317,851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7,317,851천원

(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제 7 조 202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